研究報告

大學 單位敎育費 算出에 관한 硏究

——學點단위당 納入金制度를 중심으로——

◇ 이 硏究論文은 1984학년도 文敎部 學術硏究助成費의 지원 ◇
◇ 을 받은 韓國大學敎育協議會의 주관하에 裵鍾根(東國大 ◇
◇ 敎授), 尹正一(서울大 敎授) 硏究陣에 의해 이루어진 것 ◇
◇ 이다. 紙面 관계상 연구내용을 전부 소개하지 못하고 제 ◇
◇ Ⅰ～Ⅳ장은 요약한 것을, 제Ⅴ～Ⅵ장은 그 全文을 게재 ◇
◇ 하였다.……〈編輯者 註〉 ◇

Ⅰ. 硏究의 設計

本 硏究는 현재 合理的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한 大學 納入金制度가 어떠한 基準에 의해서 改善되어야 하는지를 單位敎育費 算出에 중점을 두어 모색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理論的 背景으로서 敎育費의 槪念, 敎育費理論, 學校敎育費에 관한 先行硏究, 대학교육비의 構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大學 單位敎育費 분석의 기초로서 大學敎育費의 財源別, 支出別 現況, 전공계열별 人件費, 運營費, 實驗實習費 現況, 大學別 納入金 운영현황 및 학과별 運營費 충족도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의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정상적인 學科 운영에 필요한 敎育費分析 등을 통하여 이상적 수준의 專攻系列別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單位敎育費를 算出하고 마지막으로 單位敎育費 算出에 비하여 大學納入金制度 改善을 위한 5가지 代案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理論的 背景

敎育費는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한다. 광의로 교육비를 본다면 가정·사회·군대 등에서 敎育活動에 사용되는 費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의도적·조직적 敎育活動인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費用을 敎育費로 볼 수 있다. 이러한 敎育費는 公式的 회계 절차를 거쳐서 투입되는 公敎育費와 學校敎育會計에 計定이 되지 않는 학용품비, 교통비 등의 私敎育費로 나누어질 수 있다. 公敎育費는 또한 부담 주체에 따라서 社會的 公敎育費와 私的 公敎育費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화폐적 지출이다. 비화폐적 지출로서의 敎育費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다. 敎育費는 이러한 분류 이외에도 支出別, 敎育主體別, 用途別, 敎育活動의 內容別, 分野別, 敎育段階別 分類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敎育活動은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經濟行爲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敎育活動에 대한 經濟理論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敎育

活動은 算出逓減의 법칙, 生産要素의 代替效果(substituting input factor), 規模의 經濟(economics of scale) 등의 經濟理論의 適用이 가능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어 敎育費(敎育投資)에 대한 관심은 주로 經濟成長이나 經濟投資收益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學校敎育의 財源確保를 위한 교육비의 합리적 사용과 더불어 敎育投資 效果에 대한 관심의 고조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適正 單位敎育費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것이 납입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合理的 準據가 된다는 점에서, 또 學科別, 專攻영역별 敎育的 受惠에 따른 經費配分이라는 점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外國의 先行硏究를 몇 가지 제시하면 D. Verry & B. Davies의 英國에 있어 59개 학과의 경상비 分析硏究, Maynard의 學生數에 따른 學生當 平均敎育費用硏究, Illinois 大學의 學科目別 學點當 費用算出硏究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學校敎育費 硏究는 裵鍾根, 鄭泰範의 "學校經費의 適正規模에 관한 硏究"(1972), 裵鍾根의 "私立 中·高等學校 財政育成에 관한 硏究"(1977), 洪根一의 "學點 및 敎科單位 등록금제도에 관한 연구"(1979), 體制設計(System Design)의 관점에서 大學의 주요 학과별 학점당 평균비용을 산출한 金明漢의 "大學의 관리개선을 위한 「體制設計」와 PPBS"(1981), 李喆晟의 "學點單位 등록금제 실시에 따른 學點單位 등록금 산정에 관한 연구"(1981), 金永哲外 "敎育投資規模와 適正 單位敎育費"(1982), 張基滿의 "國民學校 敎育費 還元率測定에 관한 硏究"(1974), 高等敎育의 財政計劃에 관한 尹正一의 "高等敎育 機會擴大 및 質管理"(1979), 裵鍾根의 "敎育刷新을 위한 私立大學 經營診斷"(1983), 그리고 大學敎育協議會의 "大學財政構造에 관한 分析硏究"(1983), "私立大學 公納金의 適正化硏究"(1984), "大學財政經營評價報告書"(1983, 1984) 등이 있다.

Ⅲ. 大學 單位敎育費 分析의 基礎

本 硏究의 조사에 應한 14개 私立大學의 財源別·支出別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財源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은 80.18%의 납입금으로 나타나 私學의 納入金 의존은 매우 크다. 다음이 전입금으로 4%, 그리고 고정부채입금 및 제적립 인출금이 4.25% 등으로 나타났다. 支出別 現況을 보면 인건비에 38.85%를 支出하고 있으며, 다음이 유형고정자산 매입지출, 무형고정자산 취득지출, 투자자산 지출, 고정부채 상환금 등을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22.93%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에는 15.46%, 실험실습비, 장학금, 학비감면비, 보건체련비, 신문방송비 등을 포함하는 學生經費에 18.85%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本 硏究에서 單位敎育費 分析의 基礎가 되는 大學敎育費의 분석은 人件費, 運營費, 實驗實習費 등 3가지의 合計이다. 먼저 人件費의 경우는 14개 調査對象別, 專攻系列別로 조사대상 學校의 敎授數를 파악, 이에 大學別 敎授의 평균봉급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산출된 專攻系列別 人件費 總額을 조사대상 학과와 학생수로 나눈 學科當, 學生當 人件費를 보면 학과당 인건비의 경우 의학계가 가장 많은 9億원이며, 다음이 理·工系로 118百萬원 水準이다. 學生當 人件費 역시 의약계가 1,898千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학계의 666千원, 이학계의 612千원 順이다.

運營費 分析은 本 硏究를 위해 사용한 質問紙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 운영비 내용은 한 학과 운영을 위한 여비, 소모품비, 실험실습비, 관공비, 학생지도비, 행사비, 도서구입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다. 專攻系列別 運營費의 學科當, 學生當 분석결과를 보면, 學科의 경우 역시 의학계가 年間 5億원이 넘는 운영비를 나타내 가장 높고, 다음이 이학 및 공학계로 學科當 2,000萬원 정도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學生當 運營費에 있어서도 의학계는 年間 100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학계가 年間 의학계 학생의 1/10 수준인 10萬원, 농학계, 예·체능계의 경우는 8萬원 안팎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실습비는 大學別 現況 파악이 곤란하므로 모든 대학이 비슷한 시설·설비 수

준인 것으로 간주하고 "大學 實驗實習設備基準" 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즉 전공계열별로 각 실험실습실에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설비의 단가를 적용하여 專攻系列別로 실험실습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보면 학생당 실험실습비 소요 중 농학계가 235,788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232,697원의 이학계, 예·체능계의 195,273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科當 실험실습비의 경우는 의학계가 7,000萬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工學系의 경우가 4,600萬원, 理學系가 4,400萬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대학들은 대부분 전공계열별로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2~3계열의 차이를 둔 납입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學科別로 운영비 충족도도 대체로 의학계의 90%를 제외하고는 80~85% 線으로 나타났다.

Ⅳ. 大學 單位敎育費의 分析

위와 같은 專攻系列別 人件費, 運營費, 施設費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본 大學敎育費의 專攻系列別 差異度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위의 3가지 요소를 합한 전공계열별 학과당 교육비 차이도를 보면 人文系를 기준(1.00)으로 하였을 때 의학계는 무려 11.91로 나타나 최고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학계와 공학계가 1.47, 농학계 1.13, 예·체능계 1.33, 사회계 1.07로 나타났으며, 사범계의 경우는 0.72로 가장 낮은 學科當 敎育費가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學生當 敎育費 差異度를 보면 역시 人文系를 1.00으로 보았을 경우 의학계가 7.87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학계가 2.34, 공학계가 1.05, 농학계 2.42, 예·체능계 2.10, 사회계 1.12 그리고 사범계가 1.06을 나타내고 있다. 공학계의 경우 학과당 교육비에서의 경우보다 학생당 교육비의 경우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공학계의 무리한 학생수 증대로 인한 1人當 敎育費 감소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敎育費 差異度 현황을 고려하고, 이에 학과당 평균 학생수, 교수당 학생수, 조교당 학생수 수준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수준의 학과 운영의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실험실습비를 학생당 경비로 산출하기 위한 修正係數를 통하여 정상적인 학과 운영에 필요한 人件費, 運營費, 實驗實習費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정상적 학과 운영을 위한 전공계열별 교육비 差異度를 보면, 學生當 敎育費의 경우 人文系를 1.00으로 하였을 경우 이학계 1.67, 공학계 2.14, 의학계 10.57, 농학계 1.69, 예·체능계 1.46, 사회계 1.90, 사범계 0.80이다. 다음으로 學生當 敎育費 差異度는 인문계를 1.00으로 하였을 경우 이학계 1.73, 공학계 2.06, 의학계 6.95, 농학계 2.41, 예·체능계 1.68, 사회계 1.04, 사범계 0.90이다.

한편 전공계열별로 본 敎育費 還元率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의학계가 249.0%, 농학계가 90.8%, 이학계가 86.5%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범계는 거우 39%의 교육비 환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상적인 수준의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했을 때의 환원율은 의학계가 338%, 농학계가 139%, 공학계 118%, 이학계 97% 등이며 사범계도 51.6%의 환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 연구조사 결과 현재 각 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의 수강 신청 학점수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납입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敎育費 還元率과 수강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공계열별로 敎育費 差異度를 무시한 納入金 制度는 改善될 필요가 있다.

Ⅴ. 大學 單位敎育費 分析을 통한 納入金 制度 改善

여기에서는 大學敎育費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納入金制度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納入金算定의 基礎資料를 推定·計算한 후 納入金制度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代案들을 탐색하고 代案別로 長·短點을 분석·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最適案을 수립·제시한다.

1. 改善의 基本方向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와 申請學點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一律的으로 부과하고 있

는 현재의 納入金制度를 보다 合理的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納入金 算定에 반영함으로써 전공계열별 敎育費 還元率의 격차가 축소되도록 한다.

나. 商品購買力에 따라 代價를 지불토록 함으로써 公平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定方式을 적용한다.

다. 敎育費 差異度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교육비 차이도 수준과 外國의 현황을 고려하되 국가발전을 위한 科學技術系人力 養成이라고 하는 국가정책을 적극 반영한다.

라.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하여 學點單位當 納入金制度를 채택하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저항과 현실적으로 實現可能性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2. 納入金 算定을 위한 基礎資料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반영할 수 있는 納入金制度를 도입하거나, 學點單位當 納入金制度를 도입하거나 혹은 양자를 모두 반영한 納入金制度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基礎資料가 추정·계산되어야 한다.

가.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는 현재 각 계열별로 투자되고 있는 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正常的으로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교육비를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 두 가지 경우에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의 격차가 〈表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극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비 차이도를 기준으로 納入金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면 현재의 전공계열별 납입금 액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納入金政策에 일대 변혁이 오고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과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키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敎育費 差異度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表 V-1〉에 제시된 교육비 차이도 修正案은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고 外國의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함은 물론 우리의 교육정책 및 국가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人文系列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치 1.00으로 할 때 理學系列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40, 공학계열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0, 의학계열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0, 농학계열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15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예·체능계는 1.20, 사회계는 1.00, 사범계는 0.90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敎育費 差異度는 시행하여 가면서 점차로 계열별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비를 감안하여 수정하여 갈 수도 있고, 또 政策意志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납입금 결정에 반영하여 시행하

〈表 V-1〉 專攻系列別 學生 1人當 敎育費 差異度

전공계열별	현재의 수준	정상적 학과운영을 위한 수준	현재 납입금 의	미국일리노이주 현황 (1977)[1]	尹正一의 연구[2]	Verry와 Davies의 연구[3]	수정안
평 균	2.37	2.22	1.02	1.35	1.35	1.30	1.33
이 학 계	2.34	1.72	1.01	1.57	1.57	1.58	1.40
공 학 계	1.05	2.06	1.00	1.57	1.57	1.38	1.50
의 학 계	7.87	6.95	1.18	2.01	2.00	—	2.50
농 학 계	2.42	2.41	0.99	—	—	1.55	1.15
예·체능계	2.10	1.68	1.02	—	—	0.94	1.20
인 문 계	1.00	1.00	1.00	1.00	1.00	—	1.00
사 회 계	1.12	1.04	1.01	0.87	0.87	1.00	1.00
사 범 계	1.06	0.90	1.00	1.09	1.10	—	0.90

주 : 1)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Data Book on Illinois Higher Education* (May 1977), p. 276.
2) 尹正一外, 高等敎育의 機會擴大 및 質管理, 韓國敎育開發院, 1979, p. 394.
3) D. Verry and B. Davies, *University Costs and Output* (Oxford: Elsevier, 1976), p. 78.

〈表 V-2〉 標集對象學科의 申請學點數別 學生數 推定

신청학점수	총 계	학기당 평균	1 학 기	2 학 기
총 계	100,084	50,042	50,042	50,042
6 학 점 이 하	252	126	84	168
7	64	32	8	56
8	98	49	19	79
9	560	280	78	482
10	293	146	51	242
11	561	281	95	466
12	1,641	730	275	1,186
13	962	481	315	647
14	1,222	611	461	761
15	2,607	1,304	1,184	1,423
16	1,924	962	989	935
17	8,884	4,442	6,219	2,665
18	18,511	9,256	8,830	9,681
19	21,716	10,858	9,196	12,520
20	20,256	10,128	10,137	10,119
21	17,429	8,714	10,213	7,216
22	1,502	751	916	586
23	989	494	486	503
24학점 이상	793	397	486	307

〈表 V-3〉 專攻系列別 申請學點數別 學生數 推定

신청학점수	총 계	이 학	공 학	의 학	농 학	예·체능	인 문	사 회	사 범
계	50,042	4,193	7,798	5,675	1,799	5,113	10,043	10,790	4,631
6학점 이하	126	11	20	14	5	13	25	27	11
7	32	3	5	4	1	3	6	7	3
8	49	4	8	6	2	5	9	11	4
9	280	23	44	32	10	29	56	60	26
10	146	12	23	17	5	15	29	31	14
11	281	24	44	32	10	29	56	61	25
12	730	61	114	82	26	75	147	157	68
13	481	40	75	54	17	49	97	104	45
14	611	51	95	69	22	62	123	132	57
15	1,304	109	203	148	47	133	262	281	121
16	962	81	150	109	35	98	193	207	89
17	4,442	372	692	504	160	454	891	958	411
18	9,256	775	1,441	1,050	333	946	1,858	1,996	857
19	10,858	911	1,692	1,231	390	1,109	2,179	2,341	1,005
20	10,128	848	1,578	1,149	364	1,035	2,033	2,184	937
21	8,714	731	1,358	988	313	890	1,749	1,879	806
22	751	63	117	85	27	77	151	162	69
23	494	42	77	56	18	50	99	106	46
24학점 이상	397	32	62	45	14	41	80	86	37

는 첫해에는 계열간에 큰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納入金制度를 개선하기 위한 方案들에서는 〈表 V-1〉에 제시된 修正案의 敎育費 差異度를 적용한다.

나. 專攻系列別 申請學點數別 學生數 推定

標集對象學校 14개교 중 학생 納入金 총액 산출에 부적절한 대학 2개교를 제외한 12개교의 표집대상 학과 학생수는 총 50,042명이다. 본 연구의 표집 대상 학생 50,042명도 〈表 Ⅳ-20〉에 제시한 14개 대학 1,2학기 총학생수 315,508명(母集團)과 같은 양상으로 學點을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표집대상 학과의 申請學點數別 학생수는 〈表 V-2〉와 같이 추정된다.

〈表 V-2〉를 추정한 절차는 학기별로 申請學點數別 학생수를 추정하고 이를 합하여 총계를 산출한 후 총계를 양분하여 學期當 平均値를 산출하였다. 이후의 〈表 V-3〉부터는 申請學點數別 학기당 평균 학생수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表 V-3〉에 제시된 전공계열별 신청학점수별 학생수도 〈表 Ⅳ-20〉에 제시된 母集團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즉 전공계열로 볼 때도 이들이 학점을 신청하는 양상은 母集團의 학생들과 유사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추정한 것이다.

다. 專攻系列別 加重學生單位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C.D.)를 반영하여 納入金을 책정하기 위하여는 加重學生單位(weighted pupil unit: wpu)를 산출하여야 한

〈表 V-4〉 專攻系列別 加重學生 單位

전공계열별	교육비차이도 (A)	학 생 수 (B)	가중학생단위 (A×B)
총 계	1.30	50,042	64,961
이 학 계	1.40	4,193	5,870
공 학 계	1.50	7,798	11,697
의 학 계	2.50	5,675	14,188
농 학 계	1.15	1,799	2,069
예·체능계	1.20	5,113	6,136
인 문 계	1.00	10,043	10,043
사 회 계	1.00	10,790	10,790
사 범 계	0.90	4,631	4,168

〈表 V-5〉 專攻系列別 總 申請學點數 推定

신청학점수	총 계	이학계	공학계	의학계	농학계	예·체능계	인문계	사회계	사범계
계	938,352	78,621	146,208	106,409	33,730	95,872	188,339	202,329	86,844
6학점 이하	756	66	120	84	30	78	150	162	66
7	224	21	35	28	7	21	42	49	21
8	392	32	64	48	16	40	72	88	32
9	2,520	207	396	288	90	261	504	540	234
10	1,460	120	230	170	50	150	290	310	140
11	3,091	264	484	352	110	319	616	671	275
12	8,760	732	1,368	984	312	900	1,764	1,884	816
13	6,253	520	975	702	221	637	1,261	1,352	585
14	8,554	714	1,330	966	308	868	1,722	1,848	798
15	19,560	1,635	3,045	2,220	705	1,995	3,930	4,215	1,815
16	15,392	1,296	2,400	1,744	560	1,568	3,088	3,312	1,424
17	75,514	6,324	11,764	8,568	2,720	7,718	15,147	16,286	6,987
18	166,608	13,950	25,938	18,900	5,994	17,028	33,444	35,928	15,426
19	206,302	17,309	32,148	23,389	7,410	21,071	41,401	44,479	19,095
20	202,560	16,960	31,560	22,980	7,280	20,700	40,660	43,680	18,740
21	182,994	15,351	28,518	20,748	6,573	18,690	36,729	39,459	16,926
22	16,522	1,386	2,574	1,870	594	1,694	3,322	3,564	1,518
23	11,362	966	1,771	1,288	414	1,150	2,277	2,438	1,058
24학점 이상	9,528	768	1,488	1,080	336	984	1,920	2,064	888

다. 가중학생단위는 전공계열별 학생수에다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表 V-4〉는 전공계열별 加重學生單位를 제시하고 있다. 총 학생수는 50,042명인데 이를 가중학생단위로 환산하면 1.30배 정도가 되는 64,961명이 된다. 敎育費 差異度가 人文系列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加重學生單位는 결국 모든 계열의 학생을 인문계열의 학생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專攻系列別 總 加重申請學點數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와 申請學點單位를 납입금 책정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전공계열 별 총 가중신청학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전공계열별 總 申請學點數가 산출되어야 한다. 〈表 V-5〉는 〈表 V-3〉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즉 〈表 V-3〉에 제시된 신청학점수별 학생수에다 신청학점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50,042명이 한 학기에 신청한 총 학점수는 938,352학점으로서 학생당 약 19학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총 신청학점수에다 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곱하면 계열별 加重申請學點數를 알 수 있다. 〈表 V-6〉은 전공계열별 총 가중신청학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가중신청학점수도 역시 人文系列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결국 각 계열별 학생들이 신청한 학점수를 모두 인문계열 학생들이 신청한 학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表 V-6〉 專攻系列別 總 加重申請學點數 推定

전공계열별	총신청학점수 (A)	C.D. (B)	가중신청학점수 (A×B)
총 계	938,352	1.30	1,218,068
이 학 계	78,621	1.40	110,069
공 학 계	146,208	1.50	219,312
의 학 계	106,409	2.50	266,023
농 학 계	33,730	1.15	38,790
예·체능계	95,872	1.20	115,046
인 문 계	188,339	1.00	188,339
사 회 계	202,329	1.00	202,329
사 범 계	86,844	0.90	78,160

마. 基本學點別 總 超過申請學點數

學點單位當 納入金制度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최초 몇 학점까지는 一律的으로 납입금을 책정하고 그 기준을 넘을 때에는 超過學點當 납입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基本學點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학점을 설정하는 이유는 대학운영비 중 固定支出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을 기본학점에서 확보하여 대학재정의 안정성을 기함은 물론 납입금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는 데 있다. 〈表 V-7〉은 基本學點別 總 超過申請學點數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학점 단위가 대체로 3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基本學點을 6, 9, 12로 해서 초과학점을 추정하였다. 기본학점을 6학점으로 할 경우에는 총 신청학점수의 32%가 되며, 기본학점을 9학점으로 한 경우에는 총 신청학점수의 48% 정도가 되고, 12학점으로 할 경우에는 총 신청학점수의 64% 정도가 된다.

바. 基本學點別 加重超過申請學點數

基本學點을 超過하는 학점에 대하여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반영한 학점 단위당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기본학점별 가중 초과신청학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기본학점을 6학점으로 할 경우 가중 초과신청학점수는 828,309학점이 되며, 9학점을 기본학점으로 할 경우에는 634,089학점이 되고, 12학점일 경우에는 441,844학점이 된다. 基準學點別 專攻系列別 加重超過申請學點數는 〈表 V-8〉, 〈表 V-9〉, 〈表 V-10〉과 같다.

3. 改善方案

대학별 전공계열별 현재의 納入金 액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의 標集對象學生이 실제로 1984년의 한 학기에 납부한 納入金 總額은 28,063,492,9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와 申請學點單位를 고려치 않고 납입금을 책정하는 현재의 방법대로 계산한다면 학생 1인당 학기당 平均 560,799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산출한 基礎資料를 근거로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납입금을 算定할 수 있는 방

〈表 V-7〉 標集對象學科의 基本學點別 學期當 總 超過申請學點數 推定

구 분	기본학점 6	기본학점 9	기본학점 10	기본학점 12
1. 총 신청학점수(A) 938,352				
2. 총 초과학점수(B)	638,100	488,465	438,910	340,373
3. 기본학점 이하의 총 신청학점수(A—B)	300,252	449,887	499,442	597,979
4. B/A(%)	68.0	52.1	46.8	36.3
초과신청 학점수				
총 계	638,100	488,465	438,910	340,373
+ 1	32	146	281	481
+ 2	98	562	1,460	1,222
+ 3	840	2,190	1,443	3,912
+ 4	584	1,924	2,444	3,848
+ 5	1,405	3,055	6,520	22,210
+ 6	4,380	7,824	5,772	55,536
+ 7	3,367	6,734	31,094	76,006
+ 8	4,888	35,536	74,048	81,024
+ 9	11,736	83,304	97,722	78,426
+10	9,620	108,580	101,280	7,510
+11	48,862	111,408	95,854	5,434
+12	111,072	104,568	9,012	4,764
+13	141,154	9,763	6,422	
+14	141,792	6,916	5,558	
+15	130,710	5,955		
+16	12,016			
+17	8,398			
+18	7,146			

〈表 V-8〉 專攻系列別 加重 超過申請學點數 推定(6學點 基準)

신청 학점수	총 계	1.40 이 학 계	1.50 공 학 계	2.50 의 학 계	1.15 농 학 계	1.20 예·체능계	1.00 인 문 계	1.00 사 회 계	0.90 사 범 계
총 계	828,309	74,847	149,132	180,898	26,377	78,232	128,081	137,589	53,153
+ 1	43	4	8	10	1	4	6	7	3
+ 2	129	11	24	30	5	12	18	22	7
+ 3	1,092	97	198	240	35	104	168	180	70
+ 4	760	67	138	170	23	72	116	124	50
+ 5	1,828	168	330	400	58	174	280	305	113
+ 6	5,678	512	1,026	1,230	179	540	882	942	367
+ 7	4,365	392	788	945	137	412	679	728	284
+ 8	6,338	571	1,140	1,380	202	595	984	1,056	410
+ 9	15,233	1,373	2,741	3,330	486	1,436	2,358	2,529	980
+10	12,489	1,134	2,250	2,725	403	1,176	1,930	2,070	801
+11	63,432	5,729	11,418	13,860	2,024	5,993	9,801	10,538	4,069
+12	144,179	13,020	25,938	31,500	4,595	13,622	22,296	23,952	9,256
+13	183,232	16,580	32,994	40,008	5,831	17,300	28,327	30,433	11,759
+14	184,066	16,621	33,138	40,215	5,860	17,388	28,462	30,576	11,806
+15	169,676	15,351	30,555	37,050	5,399	16,020	26,235	28,185	10,881
+16	15,596	1,411	2,808	3,400	497	1,478	2,416	2,592	994
+17	10,905	1,000	1,964	2,380	352	1,020	1,683	1,802	704
+18	9,268	806	1,674	2,025	290	886	1,440	1,548	599

〈表 V-9〉 專攻系列別 加重 超過申請學點數 推定(9學點 基準)

신청학점수	총 계	1.40 이 학 계	1.50 공 학 계	2.50 의 학 계	1.15 농 학 계	1.20 예·체능계	1.00 인 문 계	1.00 사 회 계	0.90 사 범 계
총 계	634,089	57,298	114,158	138,481	20,194	59,886	98,048	105,325	40,699
÷ 1	192	17	35	43	6	18	29	31	13
÷ 2	731	67	132	160	23	70	112	122	45
÷ 3	2,840	256	513	615	90	270	441	471	184
÷ 4	2,493	224	450	540	78	235	388	416	162
÷ 5	3,977	357	713	866	127	372	615	660	267
÷ 6	10,156	916	1,827	2,220	324	958	1,572	1,686	653
÷ 7	8,743	794	1,575	1,908	282	823	1,351	1,449	561
÷ 8	46,131	4,166	8,304	10,080	1,472	4,358	7,128	7,664	2,959
÷ 9	108,136	9,765	19,454	23,625	3,447	10,217	16,722	17,964	6,942
÷10	140,947	12,754	25,380	30,775	4,485	13,308	21,790	23,410	9,045
÷11	144,624	13,059	26,037	31,598	4,605	13,662	22,363	24,024	9,276
÷12	135,741	12,281	24,444	29,640	4,319	12,816	20,988	22,548	8,705
÷13	12,673	1,147	2,282	2,763	404	1,201	1,963	2,106	807
÷14	8,980	823	1,617	1,960	290	840	1,386	1,484	580
÷15	7,725	672	1,395	1,688	242	738	1,200	1,290	500

〈表 V-10〉 專攻系列別 加重 超過申請學點數 推定(12學點 基準)

신청학점수	총 계	1.40 이 학 계	1.50 공 학 계	2.50 의 학 계	1.15 농 학 계	1.20 예·체능계	1.00 인 문 계	1.00 사 회 계	0.90 사 범 계
총 계	441,844	39,929	79,548	96,498	14,073	41,730	68,321	73,393	28,352
÷ 1	625	56	113	135	20	59	97	104	41
÷ 2	1,586	143	285	345	51	149	246	264	103
÷ 3	5,079	458	914	1,110	162	479	786	843	327
÷ 4	4,995	454	900	1,090	161	470	772	828	320
÷ 5	28,833	2,604	5,190	6,300	920	2,724	4,455	4,790	1,850
÷ 6	72,090	6,510	12,969	15,750	2,298	6,811	11,148	11,976	4,628
÷ 7	98,665	8,928	17,766	21,543	3,140	9,316	15,253	16,387	6,332
÷ 8	105,181	9,498	18,936	22,980	3,349	9,936	16,264	17,472	6,746
÷ 9	101,807	9,211	18,333	22,230	3,240	9,612	15,741	16,911	6,529
÷10	9,748	882	1,755	2,125	311	924	1,510	1,620	621
÷11	7,056	647	1,271	1,540	228	660	1,089	1,166	455
÷12	6,179	538	1,116	1,350	193	590	960	1,032	400

안들을 모색·제시한다.

가. 第一案 :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를 반영한 納入金算定

학기당 納內金 總額을 加重學生單位(〈表 V-4〉 참조)로 나누면 人文系 학생 1인당 한 학기의 納入金이 된다. 여기에다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곱하면 각 계열별 학생 1인당 한 학기의 납입금액을 얻을 수 있다.

〈計算方法〉

28,063,492,900원÷64,961명=432,005원
(人文系 학생 1인당 납입금액)

432,005원×전공계열별 C.D.=전공계열별 학생 1인당 납입금액

이와 같은 방법으로 專攻系列別 학생 1인당 한 학기의 納入金을 산출한 결과는 〈表 V-11〉과 같다. 납입금이 가장 비싼 계열은 醫學系列로서 학기당 약 108만원 정도가 되며, 그 다음은 工學

系로서 학기당 약 65만원 정도가 된다. 반면에 납입금이 가장 싼 계열은 師範系列로서 학기당 약 39만원 정도가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圖 V-1〉과 같다.

이 방법은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는 고려하고 있으나 申請學點數의 다과를 고려치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획일적인 納入金 算定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表 V-11〉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할 경우 學生 1人當 納入金

전공계열별	C.D.	학생 1인당 납입금 (기준액*×C.D.)
평 균	1.33	575,107원
이 학 계	1.40	604,807
공 학 계	1.50	648,008
의 학 계	2.50	1,080,013
농 학 계	1.15	496,806
예·체 능 계	1.20	518,406
인 문 계	1.00	432,005
사 회 계	1.00	432,005
사 범 계	0.90	388,805

나. 第二案 :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定

학기당 納入金 總額을 申請學點數(〈表 V-5〉 참조)로 나누면 학점단위당 납입금액을 구할 수 있다.

〈計算方法〉

28,063,492,900원÷938,352학점=29,907원

학점단위당 납입금액은 약 3만원 정도가 되므로 10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입금은 30만원이 되고, 20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納入金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最高學點基準을 설정하고 최고 학점기준까지는 동일한 액수의 납입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表 V-12〉는 최고 학점기준을 설정하고 최고 학점까지는 동일한 액수의 납입금을 算定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자료이다. 예를 들면 6학점까지는 약 18만원 정도, 7학점부터 12학점까지는 약 28만원 정도, 그리고 24학점 이상은 약 64만원 정도로 책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申請學點의 다소에 따라서 납입금상에 차등을 둔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納入金制度를 개선하기 위한 제1단계로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敎育費 差異를 적용하는 방법보다 계산이 용이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또 현행 納入金制度에 대한 불만이 일차적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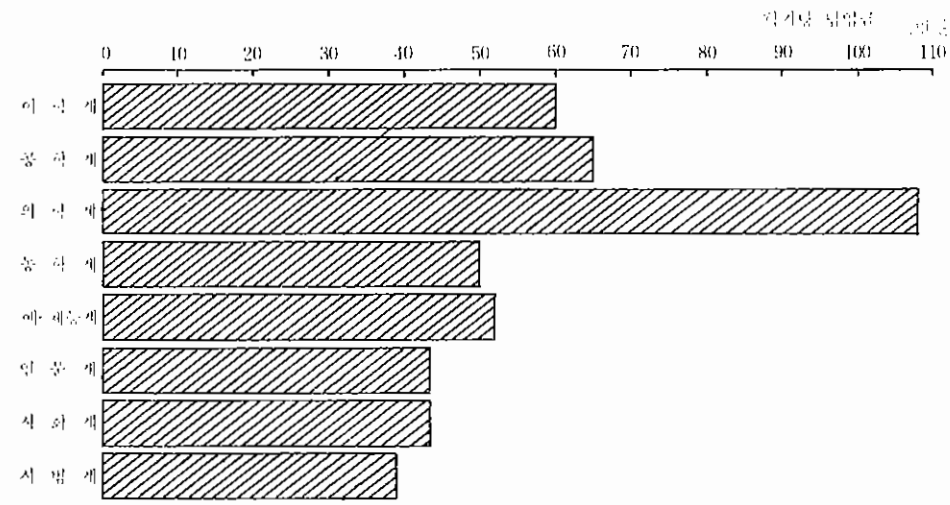

〈圖 V-1〉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期當 納入金 比較

〈表 V-12〉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出

학점단위별	학점단위당	최고 학점 기준 단위당
1	29,907원	179,442원
2	59,814	
3	89,721	
4	119,628	
5	149,535	
6	179,442	
7	209,349	284,117
8	239,256	
9	269,163	
10	299,070	
11	328,977	
12	358,884	
13	388,791	463,559
14	418,698	
15	448,605	
16	478,512	
17	508,419	
18	538,326	
19	568,233	643,001
20	598,140	
21	628,047	
22	657,954	
23	687,861	
24이상	717,768	

다. 第三案 : 基本學點 設定 후 超過學點에 대하여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定

대학 재정의 安定을 기함은 물론 납입금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基本學點을 설정하여 납입금 총액의 一定率을 확보하되 기본학점까지는 모든 학생에게 均等한 납입금액을 부과하고 기본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대하여는 學點單位當 納入金算定方式을 적용한다. 기본학점은 6학점, 9학점, 12학점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計算方法〉

① 基本學點을 6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50% 확보

28,063,492,900원×0.5

=14,031,746,450원

14,031,746,450원÷50,042명=280,400원

(6학점까지의 納入金額)

14,031,746,450원÷638,100(초과학점)

=21,990원(초과학점당 納入金額)

② 基本學點을 9학점으로 한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60% 확보

28,063,492,900원×0.6

=16,838,095,740원

16,838,095,740원÷50,042명=336,480원

(9학점까지의 納入金額)

28,063,492,900원−16,838,095,740원

=11,225,397,160원

11,225,397,160원÷488,465(초과학점)

=22,981원(초과학점당 納入金額)

③ 基本學點을 12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70% 확보

28,063,492,900원×0.7

=19,644,445,030원

19,644,445,030원÷50,042명=392,560원

(12학점까지의 納入金額)

28,063,492,900원−19,644,445,030원

=8,419,047,870원

8,419,047,870원÷340,373(초과학점)

=24,735원(초과학점당 納入金額)

이상과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納入金을 산출한 결과를 〈表 V-13〉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6학점을 基本學點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학점까지는 약 28만원 정도가 되며, 학점이 1單位 증가함에 따라서 21,990원이 증가되어 24학점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학점을 18학점 초과하게 되므로 納入金額은 약 676,000원 정도가 된다. 基本學點을 9학점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학점까지 약 336,000원이 되고, 학점이 1單位 증가함에 따라서 22,981원이 증가되어 24학점을 申請할 경우에는 基本學點을 15학점 초과하게 되므로 納入金額은 약 68만원이 된다. 그리고 基本學點을 12학점으로 한 경우에는 기본학점까지 약 39만이 되고, 학점이 1單位 증가함에 따라서 24,735원이 증가되어 24학점을 신청하게 되면 納入金額은 약 69만원 정도가 된다. 〈圖 V-2〉는 이와 같은 基本學點別 납입금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방법은 대학 재정의 安定化를 기하고 신청

학점수를 고려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第二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表 V-13〉 基本學點 설정 후 超過學點에 대한 學點單位當 納入金

구 분	기본학점6(납입금총액의 50% 확보)	기본학점9(납입금총액의 60% 확보)	기본학점12(납입금총액의 70%확보)
기본학점이하	280,400	336,480	392,560
+1	302,390	359,461	417,295
+2	324,380	382,442	442,030
+3	346,370	405,423	466,765
+4	368,360	428,404	491,500
+5	390,350	451,385	516,235
+6	412,340	474,366	540,970
+7	434,330	497,347	565,705
+8	456,320	520,328	590,440
+9	478,310	533,309	615,175
+10	500,300	566,290	639,910
+11	522,290	589,271	664,645
+12	544,280	612,252	689,380
+13	566,270	635,233	
+14	588,260	658,214	
+15	610,250	681,195	
+16	632,240		
+17	654,230		
+18	676,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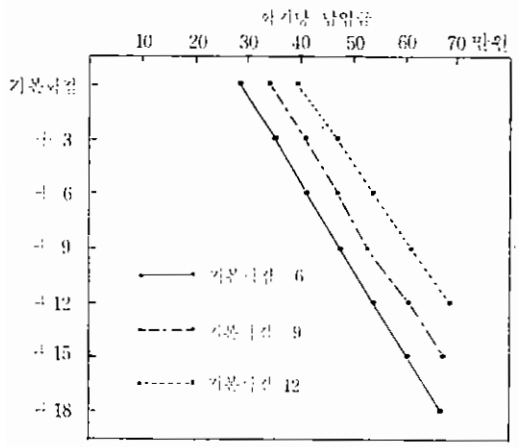

〈圖 V-2〉 基本學點 설정 후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定

라. 第四案 : 基本學點 設定 후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定

이 방안은 基本學點을 설정한 후에 기본학점을 超過한 학점에 대하여는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하여 학점단위당 납입금을 산정하는 안이다. 第三案과의 차이는 초과학점에 대하여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한 학점단위당 납입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서도 基本學點을 6학점, 9학점, 12학점의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計算方法〉

① 基本學點을 6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50% 확보

6학점까지의 納入金額=280,400원(第三案의 ① 참조)

超過學點單位當 納入金=(초과학점에서 확보해야 할 納入金額)÷(wpu×초과학점수)

=14,031,746,450원÷828,309학점(表 V-8 참조)

=16,940원(초과학점당 納入金額)

超過學點當 納入金額 16,940원은 교육비 차이도의 기준계열인 人文系列 학점당 납입금액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다 각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곱하면 각 계열에 있어서 초과학점 단위당 납입금이 산출되는데 그 결과는 〈表 V-14〉와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圖 V-3〉과 같다.

〈表 V-14〉 基本學點 설정 후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6學點 基準)

계 열 별	학생당납입금기준액(6학점까지 적용)	C.D.	초과학점당 납 입 금
이 학 계	280,400원	1.40	23,716원
공 학 계	〃	1.50	25,410
의 학 계	〃	2.50	42,350
농 학 계	〃	1.15	19,481
예·체능계	〃	1.20	20,328
인 문 계	〃	1.00	16,940
사 회 계	〃	1.00	16,940
사 범 계	〃	0.90	15,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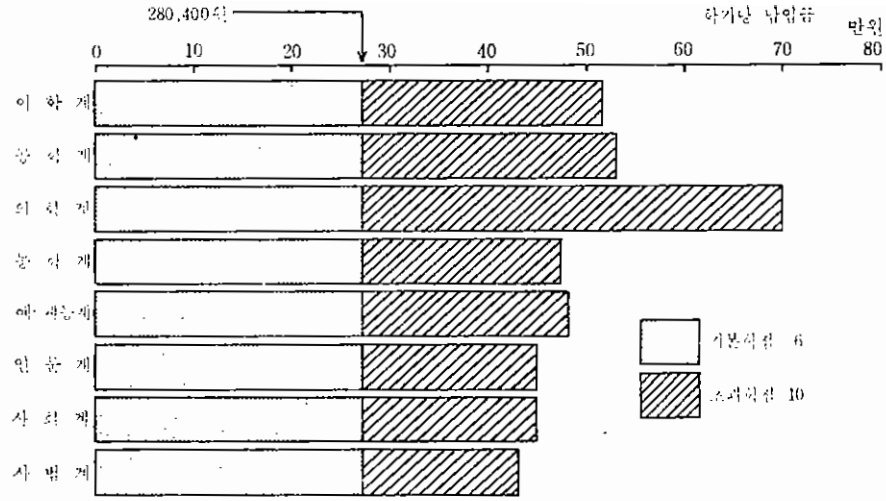

〈圖 V-3〉 基本學點 설정 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 (6學點 基準)

〈表 V-15〉 基本學點 설정 후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 (9學點 基準)

계 열 별	학생당 납입금 기준액 (9학점까지 적용)	C.D.	초과학점당 납입금
이 학 계	336,480원	1.40	24,784원
공 학 계	〃	1.50	26,554
의 학 계	〃	2.50	44,258
농 학 계	〃	1.15	20,358
예·체 능 계	〃	1.20	21,244
인 문 계	〃	1.00	17,703
사 회 계	〃	1.00	17,703
사 범 계	〃	0.90	15,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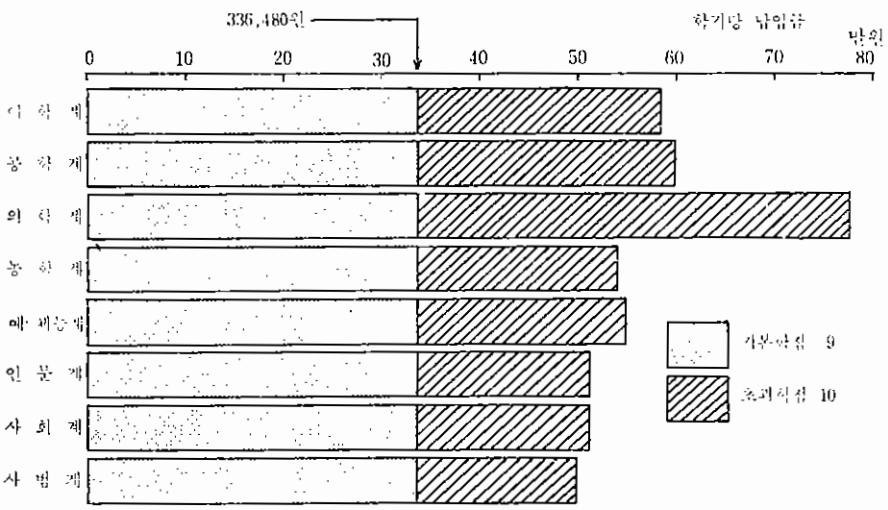

〈圖 V-4〉 基本學點 설정 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 (9學點 基準)

② 基本學點을 9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60% 확보

9학점까지의 納入金額=336,480원(第三案의 ② 참조)

超過學點單位當 納入金=초과학점에서 확보해야 할 納入金額÷(wpu×초과학점수)=11,225,397,160원÷634,089학점(〈表 V-9〉 참조)=17,703원(초과학점당 納入金額)

超過學點單位當 납입금액 17,703원에다 각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곱해서 얻은 전공계열별 초과학점당 납입금액은 〈表 V-15〉와 같고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圖 V-4〉와 같다.

③ 基本學點을 12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70% 확보

12학점까지의 納入金額=392,560원(第三案의 ③ 참조)

超過學點單位當 納入金=(초과학점에서 확보해야 할 納入金額)÷(wpu×초과학점수)=8,419,047,870원÷441,844 학점(〈表 V-10〉 참조)=19,054원(초과학점당 納入金額)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학점 단위당 납입금액 19,054원에다 각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곱해서 산출한 전공계열별 초과학점당 납입금은 〈表 V-16〉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圖 V-5〉와 같다.

이 방법은 基本學點을 설정하여 납입금 총액의 一定率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재정의 安定性을 기하고 납입금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함은 물론 초과학점에 대하여는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하고 申請學點數를 고려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表 V-16〉 基本學點 설정 후 專攻系列別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12學點 基準)

계열별	학생당 납입금 기준액 (12학점까지 적용)	C.D.	초과학점당 납입금
이학계	392,560원	1.40	26,676원
공학계	〃	1.50	28,581
의학계	〃	2.50	47,635
농학계	〃	1.15	21,912
예·체능계	〃	1.20	22,865
인문계	〃	1.00	19,054
사회계	〃	1.00	19,054
사범계	〃	0.90	17,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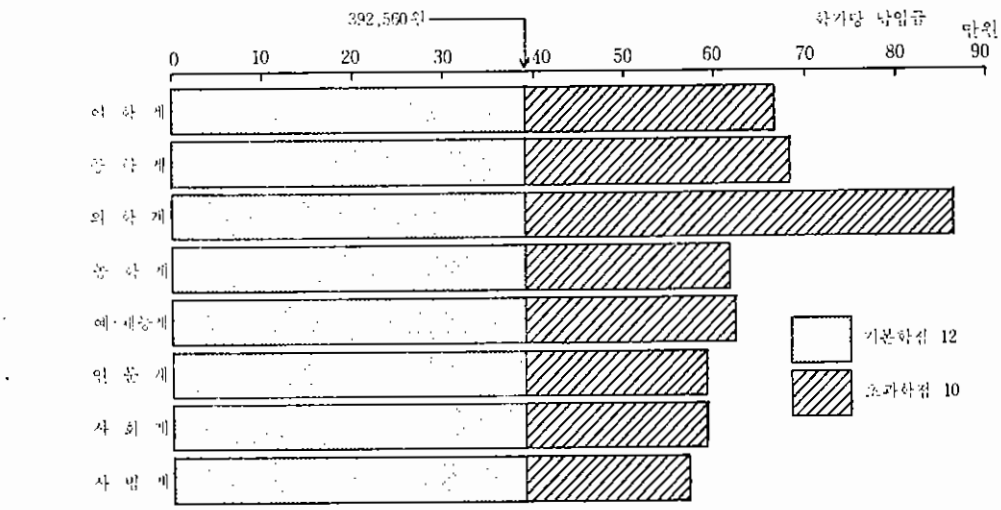

〈圖 V-5〉 基本學點 설정 후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12學點 基準)

러나 基本學點에 있어서는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치 못하고 모든 계열에 均等한 납입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마. 第五案 : 專攻系列別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 算定

이 방법은 基本學點을 설정하여 납입금 총액의 一定率을 확보하되 기본학점에 대하여 일률적인 납입금 책정이 아니라 專攻系列別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여 납입금을 책정한다는 것이 第四案과의 차이점이다. 超過學點에 대하여는 第四案과 같이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여 학점단위당 납입금을 책정한다. 따라서 이 방안은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다같이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한 학점단위당 납입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計算方法〉

① 基本學點을 6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50% 확보

基本學點의 納入金=(기본학점에서 확보해야 할 納入金額)÷wpu=14,031,746,450원÷64,961명(〈表 V-4〉 참조)=216,003원

超過學點單位當 納入金=16,940원(第四案의 ①과 同一)

基本學點의 납입금액 216,003원과 超過學點單位當 납입금액 16,940원에다 각각 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곱하면 각 계열별 基本學點의 納入金額과 超過學點當 納入金額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表 V-17〉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圖 V-6〉과 같다.

〈表 V-17〉 專攻系列別 基本學點과 超過학점에 대하여 敎育費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6學點 基準)

계 열 별	C.D.	학생당 납입금 기준액 (6학점까지 적용)	초과학점당 납입금
이 학 계	1.40	302,404원	23,716원
공 학 계	1.50	324,005	25,410
의 학 계	2.50	540,008	42,350
농 학 계	1.15	248,403	19,481
예·체 능 계	1.20	259,204	20,328
인 문 계	1.00	216,003	16,940
사 회 계	1.00	216,003	16,940
사 범 계	0.90	194,402	15,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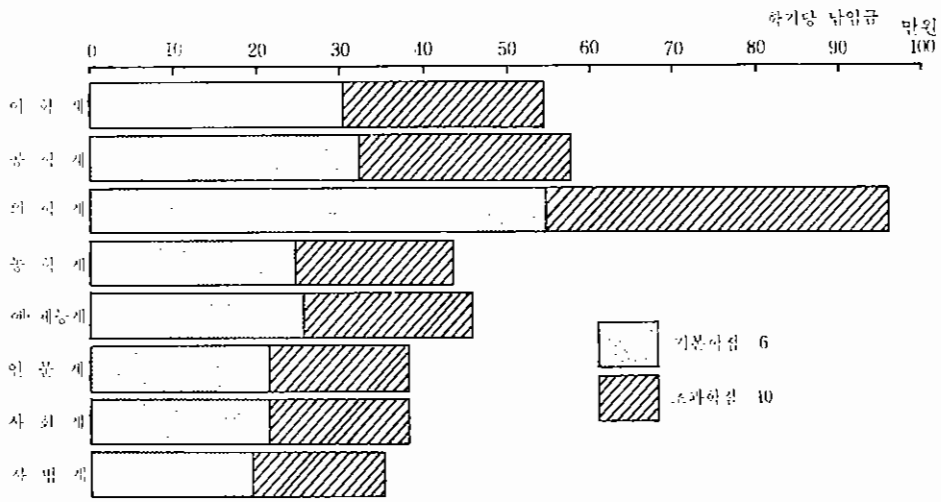

〈圖 V-6〉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6學點 基準)

② 基本學點을 9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60% 확보

基本學點의 納入金=(기본학점에서 확보해야 할 納入金額)÷wpu=16,838,095,740원÷64,961명(〈表 V-4〉 참조)=259,205원

超過學點單位當 納入金=17,703원(第四案의 ②와 同一)

第五案의 ①과 같은 방법으로 基本學點의 납입금액 259,205원과 超過學點單位當 납입금액 17,703원에다 각각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곱하면 각 계열별 기본학점의 납입금액과 초과학점당 납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表 V-18〉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圖 V-7〉과 같다.

③ 基本學點을 12학점으로 할 경우 : 기본학점에서 納入金 總額의 70% 확보

基本學點의 納入金=(기본학점에서 확보해야 할 納入金額÷wpu=19,644,445,030원÷64,961명(〈表 V-4〉 참조)=302,404원

超過學點單位 納入金=19,054원(第四案의 ③과 同一)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基本學點의 납입금액 302,404원과 超過學點單位當 납입금액 19,054원에다 각각 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곱하여 각 계열별 基本學點의 納入金額과 超過學點當 納入金額을 산출한 결과를 〈表 V-19〉에 제시하였다.

〈表 V-18〉 專攻系列別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9學點基準)

계 열 별	C.D.	학생당 납입금 기준액 (9학점까지 적용)	초과학점당 납입금
이 학 계	1.40	362,887원	24,784원
공 학 계	1.50	388,808	26,554
의 학 계	2.50	648,013	44,258
농 학 계	1.15	298,086	20,358
예·체 능 계	1.20	311,046	21,244
인 문 계	1.00	259,205	17,703
사 회 계	1.00	259,205	17,703
사 범 계	0.90	233,285	15,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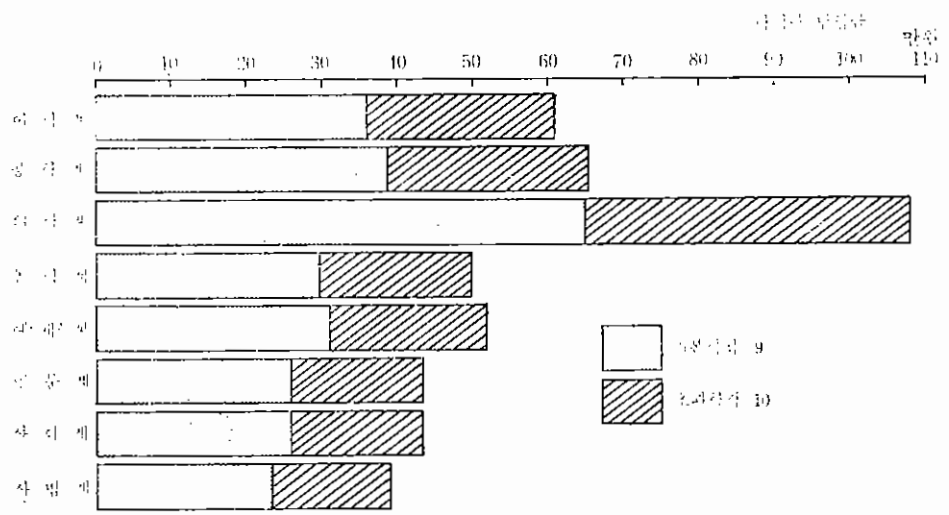

〈圖 V-7〉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9學點 基準)

〈圖 V-8〉은 〈表 V-19〉에 제시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방법은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다같이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고 申請學點單位를 고려하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改善方案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성으로 볼 때 導入·適用의 절차상 第三案이나 第四案을 실시한 연후에 第五案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表 V-19〉 專攻系列別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12學點 基準)

계 열 별	C.D.	학생당 납입금 기준액 (12학점까지 적용)	초과학점당 납입금
이 학 계	1.40	423,366원	26,676원
공 학 계	1.50	453,606	28,581
의 학 계	2.50	756,010	47,635
농 학 계	1.15	347,765	21,912
예·체 능 계	1.20	362,885	22,865
인 문 계	1.00	302,404	19,054
사 회 계	1.00	302,404	19,054
사 범 계	0.90	272,164	17,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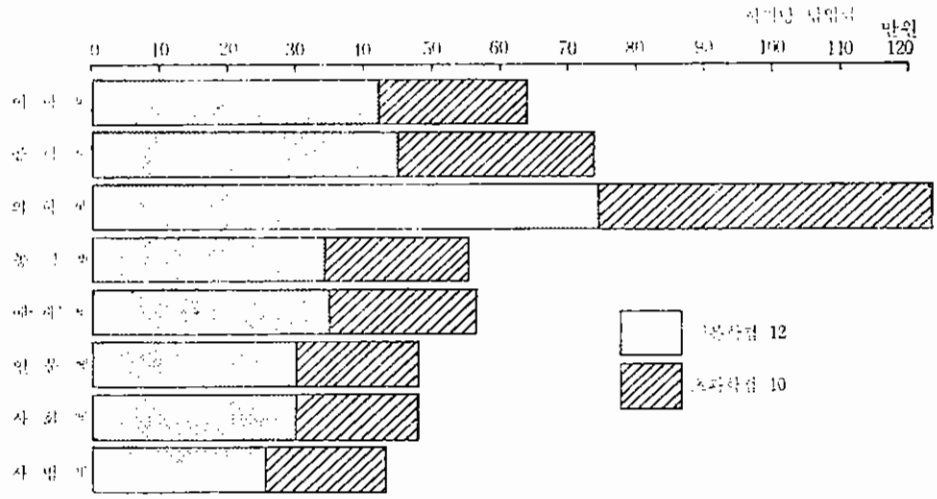

〈圖 V-8〉 基本學點과 超過學點에 대하여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한 學點單位當 納入金(12學點 基準)

4. 改善案別 長·短點 比較

이상에서 현행의 納入金制度를 보다 合理的으로 개선하기 위한 諸方案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개선방안들의 초점은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學點單位當 納入金과 專攻系列別 差等納入金, 그리고 基本學點 설정의 세 가지에 있다. 각 방안들은 이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고려하거나 두 가지를 고려하거나, 또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할 경우에 탐색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세 要因 중 한 가지만을 고려한 방안은 적용상의 용이성은 있으되 合理性이 부족하고 반대로 세 가지 要因을 모두 고려한 방안은 合理性은 있으되 적용상의 용이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第一案은 납입금 산정시에 전공계열별 敎育費의 差異度를 고려하여 계열간에 차등 납입금을 적용하는 것인데, 학점을 많이 신청한 학생과 적

게 신청한 학생간에 납입금에 차등이 없이 一律的으로 산정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즉 1학점을 신청한 학생과 21학점을 신청한 학생이 同一한 납입금을 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第二案은 納入金算定에 있어서 申請學點數를 고려하여 학점을 많이 신청한 학생과 적게 신청한 학생간에 차등 납입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안은 第一案과는 반대로 전공계열간의 敎育費 差異度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본질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드는 醫學系列의 학생이나 교육비가 적게 드는 師範系列의 학생이 동일한 납입금을 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第三案은 基本學點을 설정하여 基本學點 내에서는 1학점을 신청하든 6학점을 신청하든 신청학점수를 구분하지 않고 登錄學生 모두에게 均一하게 납입금을 책정하고, 基本學點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는 學點單位當으로 납입금을 算定하

〈表 V-20〉 改善案別 長·短點 比較

구 분	第一案	第二案	第 三 案	第 四 案	第 五 案
1. 특 성	· C.D. 반영한 납입금 산정	· 학점단위당 납입금 산정	· 기본학점 설정 후 초과학점에 대하여 학점단위당 납입금 산정	· 기본학점 설정 후 초과학점에 대하여 C.D. 반영 학점단위당 납입금 산정	· 기본학점과 초과학점에 C.D. 반영 학점단위당 납입금 산정
2. 산 출 방 법	· 납입금총액/WPU	· 납입금총액/총신청학점	· 기본학점 결정 : 기본학점에서 확보한 납입금액 결정 (A) —6학점 : 50% —9학점 : 60% —12학점 : 70% · A/학생수 · (납입금총액—A)/초과학점	· 좌 동 · 좌 동 · (납입금총액—A)/(WPU×초과학점)	· 좌 동 · A/WPU · 좌 동
3. 납입금액	· 432,005원×C.D.	· 학점단위당 29,907원	· 6학점 기 본 280,400원 초과당 21,990원 · 9학점 기 본 336,480원 초과당 22,981원 · 12학점 기 본 392,560원 초과당 24,735원	· 6학점 기 본 280,400원 초과당 16,940원×C.D. · 9학점 기 본 336,480원 초과당 17,703원×C.D. · 12학점 기 본 392,560원 초과당 19,054원×C.D.	· 6학점 기 본 216,003원×C.D. 초과당 16,940원×C.D. · 9학점 기 본 259,205원×C.D. 초과당 17,703원×C.D. · 12학점 기 본 302,404원×C.D. 초과당 19,054원×C.D.
4. 장 점	· C.D. 고려	· 학점단위 고려	· 학점단위 고려 · 대학재정 안정화	· 학점단위 고려 · 초과학점에 C.D. 고려 · 대학재정 안정화	· 학점단위 고려 · 기본과 초과학점에 C.D. 고려 · 대학재정 안정화
5. 단 점	· 학점단위 무시	· C.D. 무시	· C.D. 무시	· 기본학점에서 C.D. 무시	—
6. 합리성 순 위	④	④	③	②	①
7. 적용편의성순위	①	①	③	④	⑤

는 방법인데 第二案과 같이 전공계열별 敎育費 差異度를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第四案은 第三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학점을 설정하고 초과학점에 대하여는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여 學點單位當 納入金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1, 2, 3 案에 비하여 合理的인 방안이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基本學點에 대한 납입금에 있어서는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치 못하다고 있다.

第五案은 第四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方案으로서 基本學點에 대한 납입금에 있어서도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合理性의 면에서 보면 改善案 중에서 最善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방안보다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表 V-20〉은 改善案別 특성, 납입금 산출 방법, 납입금액,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第四案의 ① 즉 "基本學點을 6학점으로 설정하여 기본학점 이하를 신청할 경우에는 納入金을 280,000원 정도로 하고, 基本學點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점당 基準額(17,000원)에다 전공계열별 교육비 차이도를 곱하여 납입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建議한다.

Ⅵ. 建 議

이상과 같은 納入金制度의 改善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本 硏究는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인하여 選定된 14개 大學을 分析對象으로 하였다. 조사대상교가 비록 專攻系列을 골고루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私立 綜合大學校라 할지라도 硏究結果를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全國 私立大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財政實態 分析을 위한 擴大硏究가 필요하다. 또한 大學뿐만 아니라 專門大學, 大學院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유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本 硏究에서 敎育費 構成要素의 하나인 運營費에 있어 학과별로 어느 정도의 基準 支出項目內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大學別로 納入金制度 改善內容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學科別 運營費 支出의 차이에서 오는 대학별 敎育費 還元率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세째, 大學別 施設·設備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本 硏究에서 算出한 實驗·實習費는 文敎部에서 모든 대학에 대해 專攻系列別로 공통적으로 권장한 施設·設備基準에 의해 算出한 것이다. 그러므로 硏究結果로 나타난 納入金制度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서는 大學別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시설·설비는 그 差異를 줄이는 방향으로 努力이 필요할 것이다.

네째, 長期的인 면에서 私立大學의 納入金 의존도는 축소되어야 하고 學校法人의 責任을 증대시켜야 한다. 즉, 私立大學 經營의 개방 및 쇄신을 통하여 收益事業의 活性化, 私學에 대한 國庫補助 등을 통해 法人의 學校에 대한 敎育的 寄與를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